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 례안

인천광역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년월일 : 2010. 8. 19.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입주대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다. 재단법인의 사업수행 범위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단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송도글로벌대학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아.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 1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송도글로벌대학을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의 지원 및 관리
2.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설립 지원
3. 그 밖의 송도글로벌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해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재원)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건물·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외국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의 설치) 송도글로벌대학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용자 등 운영비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인천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까지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제35조(대부료의 감면)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의4(파견근무)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임용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의2(파견근무)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별 첨”</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련법령 발췌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

□ 재단 연도별 수지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단 자체 수지	수입 (A)		2,318	6,858	12,386	18,763	24,631	32,161	38,340	42,746	44,813	45,911	46,619
	지출 (B)	294	5,041	8,289	12,274	16,905	21,042	24,553	27,151	29,129	30,295	30,886	31,255
	수지 (C)=(A) -(B)	-294	-2,724	-1,432	111	1,858	3,589	7,609	11,189	13,617	14,518	15,025	15,364
	누적 수지	-294	-3,018	-4,450	-4,338	-2,480	1,108	8,717	19,906	33,523	48,041	63,065	78,429
대학 지원금	연도별 대학지원 금(D)		-7,930	-12,602	-13,765	-10,513	-9,418	-1,825					
	누적 대학지 원금		-7,930	-20,531	-34,296	-44,809	-54,228	-56,053					
대학 지원금 포함시 재단수 지	수지 (C)+(D)	-294	-10,653	-14,033	-13,654	-8,655	-5,830	5,784	11,189	13,617	14,518	15,025	15,364
	누적 수지	-294	-10,947	-24,981	-38,635	-47,290	-53,119	-47,335	-36,147	-22,530	-8,012	7,013	22,377
재단 최소 출연규모		10,947	14,033	13,654	8,655	5,830							

※ 자료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경기산업연구원 '10.5)

※ 출연 재원은 수익부지 개발이익 중 사업 후 잉여현금으로 활용(내역 별첨#)

수익부지 개발이익 잉여현금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 수익부지 개발개요

- 위 치 : 송도동 190-2 (송도지구 5공구 Rm1)
- 사업기간 : 2010. 5 ~ 2013. 10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대지면적 : 94,295m² (28,574 평)
- 연 면 적 : 436,946m² (132,176평)
- 용 적 률 : 330% (지하2층, 지상 45층)
- 사업시행자 : SGUC(주), (주)대우건설
 - ※ (주)대우건설 : 2009. 11. 19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가 사업약정을 통해 수익용 부지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
- 분양내역 : 공동주택(1,703세대), 오피스텔(606세대), 판매시설 : 26,614m²(지하 및 지상1, 2층)

□ 사업수익 수입(입금) 스케줄

- 수익부지 개발이익 : 575,000백만원
 - 분양률과 관계없이 (주)대우건설이 사전에 합의된 지급스케줄에 따라 수령(약정/합의서, '09.11월/10.5월 체결)

(단위 : 백만원)

시 기	M+1월	M+6월	M+11월	M+17월
확정제공금	28,100	37,800	64,300	37,900
시 기	M+22월	M+28월	M+35월	M+41월
확정제공금	14,100	12,900	38,700	106,500
시 기	M+42월	M+45월	총계	
확정제공금	90,800	143,900	575,000	

(“M” : 공동주택 분양 계약일이 속한 월)

□ 잉여현금 현황(추정)

- 잉여현금 : 660억원 (5,750억원 - 5,090억원)
- 비용 산출내역 : 5,090억원
 - 캠퍼스 민자매칭 2,520억원(1단계 5,041 : 국비 1,260 시비 1,260 민자 2,520)
 - 회사 운영비 100억원(2013년까지 예측), 마케팅비 150억원, 이동식가구/실협기자재비 630억원, 토지현금취득비 450억원, 토지 취득등록세 215억원, PF 이자 추정액 500억원, 부가세 250억원, 법인세 추정액 275억원 등